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13
----------	-------

발의연월일 : 2026. 1. 21 .

발 의 자 : 임호선·윤종균·김주영
정준호·김영호·차지호
어기구·임미애·안도걸
장종태·윤준병·김승원
위성곤·최혁진·이상식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등을 국가어항으로 정의하고, 국가어항의 지정권자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어항은 단순한 항구 기능을 넘어 어업인의 생명과 어선 등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기반시설을 갖춘 어촌지역의 경제 중심지이자 관광 중심지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현재 지정된 115개의 국가어항이 모두 해안에 인접해 있으며 내수면에 지정된 국가어항은 전무한 실정임.

이로 인해 내수면을 중심으로 한 내륙 어촌은 기반시설의 확충과 체계적인 발전에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이는 곧 국가 어촌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어항을 지정하려는 경우 내륙 및 해안

어촌 간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도록 국가어항의 지정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어항을 지정하려는 경우 내륙 및 해안 어촌 간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어항 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 ① · ② (생 략) <u><신 설></u> ③ ~ ⑦ (생 략)	제17조(어항 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u> <u>따라 국가어항을 지정하려는</u> <u>경우 내륙 및 해안 어촌 간의</u> <u>균형적 발전을 고려하여야 한</u> <u>다.</u> ④ ~ ⑧ (현행 제3항부터 제7 항까지와 같음)